

대법원 2005. 10. 14 선고 2004다2601 판결 [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기절차]

참 조 조 문

민법 제275조, 제276조

재 판 경 과

대법원 2005. 10. 14 선고 2004다2601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03. 12. 16 선고 2002나57890 판결

전 문

【원고, 상고인】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대광고회(소송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우BA)

【피고, 피상고인】 윤CA외 1(소송대리인 변호사 김BB)

【원심판결】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16. 선고 2002나57890 판결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, 원고 교회 명의로 등기된 판시 교회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대표자 명칭을 피고 윤CA으로, 그리고 소유자 명의를 피고 기독교대한OQ교회 OO교회(아래에서는 피고 교회라 한다)로,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경위는 원고 교회가 2000. 5. 22. 기독교대한OQ교회 OP교회(아래에서는 OP교회라 한다)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의 명칭을 OP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OQ교회 소속으로서 새로운 명칭의 교회로 변경하고 그 대표자를 OP교회의 목사인 피고 윤CA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, OP교회가 그 무렵 위 합병계약 성립의 조건으로 정한 건축비용 4억원 중 3억 9,000만원 및 감사헌금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 1,000만원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지급을 유예하였다가 이 사건 소제기 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완불하였고, 한편 박DA을 피고 교회의 원로목사로 대우하기로 하는 조건은 피고 교회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OQ교회의 헌법상 OQ교회의 목사경력이 없는 원고는 정식의 원로목사로 추대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대우와 신앙적인 존경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인데, OP교회가 비록 퇴임목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지라도 박DA에게 5년 동안 월 700,000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그 무렵부터 1년 넘게 이를 지급해 왔는데 박DA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수령을 거부한 점, 박DA은 2002. 4. 19. 피고 교회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고도 더 이상의 보장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건 역시 피고 측이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.

나아가 원심은, 원고 교회의 규약상 교회재산을 처분하려면 당회장인 목사를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 당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여져 있는데, 원고 교회가 위 합병계약에 앞서 당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박DA을 제외한 4명 중 3명이 사전에 이를 승낙한 다음 합병계약서에도 임회인으로서 날인하였을 뿐 아니라, 원고 교회가 2002. 4. 21. 위 당회원으로 구성된 재산이사회 및 교인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개최하여 합병계약에 따른 교회재산의 이전을

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재산처분을 위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었는 바, 그렇다면 위 각 표시변경등기는 그 전제되는 합병계약상의 조건이 모두 이행되고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처분에 관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었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어 원고 교회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투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, 그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.

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(2002. 4. 19.자 합의는 박DA 개인이 피고 교회와 사이에서 약정한 것으로서 그 이행 여부가 위 합병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)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합병계약의 성질과 조건의 이행 여부, 위 등기를 위한 절차의 준수 여부, 2002. 4. 19.자 합의 불이행의 효과 등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김용담(재판장) 배기원 이강국(주심)